# 노인인권교육에 대한 사이버교육 등 이수 안내

노인인권교육은 「노인복지법」 제6조의3(인권교육)에 의거하여 2018년 9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. 노인복지시설 설치·운영자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매년 1회 인권교육을 집합(4시간) 또는 사이버(6시간)를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. 교육 이수 결과(이수증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## 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

○ 교육 종료일: 2019. 11. 30. ~ 2020. 1. 31. (20년 2월 초 오픈 예정)

○ 문의처: 학습지원센터 1670-9087

※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에 한하여 2019년 교육실적 제출 시 "2020.2.29."까지 이수한 내용이 **2019년 실적으로 인정**됨(보건복지부 안내, 2019.11.29.)

## □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교육

○ 교육 종료일: 2019. 12. 31.

○ 과목명: 노인관련시설인권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

- 교육신청일

  · 2019. 12. 1.(일) 신청 (12월 31일까지 학습 가능)

  · 2019. 12. 11.(수) 신청 (12월 31일까지 학습 가능)

  · 2019. 12. 21.(토) 신청 (12월 28일까지 수강신청, 12월 31일까지 학습 가능)

○ 문의처: 02-865-5640 / 070-4820-4151

○ 이수시간: 6시간 10분

○ 신청방법

-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(https://www.humanrights.go.kr) → 회원가입 → 인권교육센터(홈페이지 왼쪽 상단 위치) →인권배움터 → 사이버교육 → 해당 과정* '상세보기' 클릭 → 수강신청

* 교육내용: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